

元宗代 고려 측 對 몽골

정례적 · 의례적 사행 양상과 그 배경*

- 1273년(元宗 14) 고려 측 賀冊封 使行 사례를 중심으로 -

이 명 미 **

1. 머리말
2. 使臣 人選, 宗室 正使 파견의 배경과 의미
3. 使行 儀禮, 중국식 朝儀 적용의 배경과 양상
4. 맺음말

1. 머리말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이전 시기 고려와 중국 왕조 간 관계와는 다소간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그 특징적 면모와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 진행된 몽골사 방면에서의 새로운 연구 동향들과의 관련 속에서, 고려-몽골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 관계에 내재한 동아시아적 관계 요소와 몽골적 관계 요소의 기능 및 비중, 상호 작용을 어떻게 구조적, 체계적으로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고려-몽골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63433).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고려-몽골 관계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 관계에 내재한 두 가지 관계 요소 가운데, 책봉-조공 관계로 표현되는 동아시아 전통적 관계 요소를 중심에 두고 설명할 것인지, 통혼 등

당대의 국제관계와 고려의 정치·사회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이어지는 시기인 고려 말·조선 초의 정치·사회 변동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고려-몽골 간을 오고 간 使行의 양상을 통해 이 관계의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행은 전근대 시기 국가 간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하고도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이러한 국가 간 외교 수단으로서의 사행은 어느 정도 관례화한 격식에 따르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는 사신을 파견한 주체 간 관계의 성격과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개별 관계의 특징적 면모를 반영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고려-몽골 간 사행에 대해서는 사행로에 대한 연구, 몽골에서 온 사신들의 압제적 행태 등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언급된 연구들, 그리고 고려 측 개별 사행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고려-몽골 관계의 성격과의 연관선상에서 그 양상을 충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의 사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책봉-조공 관계로 표현되는 국가 간 관계에서 조공국이 신년을 하례하기

몽골적 관계 요소를 중심에 두고 바라볼 것인지와 관련해서 학계에 논쟁이 이루어진 바 있다. 前者의 설명방식과 관련한 대표적 연구로는 이익주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익주, 1996『高麗·元 관계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고려-몽골 관계사 연구시각의 검토: 고려-몽골 관계사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접근」『한국중세사연구』27; 2011「고려-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 관계 요소의 탐색」『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동북아역사재단, 경북대학교 한중교류연구원 엮음). 後者 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들이 대표적이다. 森平雅彦, 1998(a)「駢馬高麗國王の成立: 元朝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東洋學報』79-4; 1998(b)「高麗王位下の基礎的考察: 大元ウルスの一分權勢力としての高麗王家」『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36集; 2008「事元期 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體制の保全問題」『北東アジア研究』別冊1(이상 2013『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 帝國秩序と王國の対応』, 名古屋大學出版會에 재수록); 김호동, 2007『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한편, 최근에는 책봉-조공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전통적 국가 간 관계의 요소와 개인 간·가문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몽골적 관계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고려-몽골 관계의 복합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복합적인 면모가 고려 사회에 인지되고 활용되어 가는 과정을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명미, 2012『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위해 책봉국에 보내는 賀正使, 황제의 聖節을 하례하는 賀聖節使 등의 進賀使로 대표되는 정례적·의례적 사행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서 사실의 전달과 협상 등을 위해 파견되는 실무적 사행이다. 이 두 가지 사행 양상은 고려-몽골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들은 이전 시기 고려와 중국왕조 간 사행의 양상을 일정 정도 계승하면서도 몽골과의 관계로 인한 특징적 면모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고려-몽골 간 실무적 사행은 이전 시기에 비해 그 빈도 및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교적인 역할을 넘어 정치적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징적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실무적 사행의 양상은 몽골의 국가체제에서 사신 [il-chi]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한편으로, 고려-몽골 관계의 특징적 면모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한편, 정례적·의례적 사행은 실무적 사행에 비해 동아시아의 사행 전통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당시 외교 상대국이었던 몽골의 관계 형성방식으로 인한 특징적 면모가 발견된다.

본 논문은 고려-몽골 간 사행 양상을 통해 그 관계의 특징적 면모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첫 단계로서, 고려 측에서 파견되었던 정례적·의례적 사행의 양상 및 관련한 의례·격식이 정비되는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1273년(원종 14), 몽골의 황후·황태자 책봉을 하례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고려 측 賀冊封 사행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 사행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사행에 서장관으로서 수행했던 이승휴가 남긴 사행 기록인 「賓王錄」의 존재 때문이다.³⁾ 연대기 자료에 보이는 사행 관련 기록들이 때로 상세한 내용을

2) 고려-몽골 간 사행에서 실무적 사행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사행의 의례적 측면이 약화하였다는 지적은 당대의 기록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崔灝, 『拙藁千百』 권2, 「送鄭仲孚書狀官序」). 실무적 사행의 비중 증가와 그 양상을 통해 고려-몽골 관계의 특징적 면모를 확인하는 것은 별도의 논문을 통해 상론할 예정인데, 우선 다음 발표문을 참조할 수 있다. 이명미, 2014 「고려-몽골 간 使臣, 화장된 공간에서 정치를 매개하다」, 제102회 한국중세사학회 전국학술대회 '고려사회 속 외국인들, 고려인과 엮이고 공존하다'.

3) 「賓王錄」은 『동안거사집』의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독립적이고 중요하여 별도의 역주본이 간행되었다[이승휴(진성규 역), 2009 『賓王錄』, 지식을 만드는

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 비해 「빈왕록」은 개인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연대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행의 전모를 제시하고 있어, 그것이 기록하고 있는 개별 사행 자체 뿐 아니라 전후의 다른 사행들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다음으로, 이 사행이 이루어진 1273년이라는 시점이, 그리고 사행의 배경이 되는 몽골 황후·황태자 책봉이라는 사안이 갖는 의미 때문이다. 이는 단지 많은 정례적·의례적 사행들 가운데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 한 사례가 아니라, 몽골이 황태자 책봉이라는 의식을 통해 중국식 제도 및 의례 정비의 과정을 어느 정도 일단락 짓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사행이었다. 따라서 이 사행은 고려-몽골 관계 초기, 양자 간 정례적·의례적 사행의 양상과 격식이 정비되는 과정 및 배경을 검토하는 데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하고도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273년 하책봉 사행과 관련해서는 「빈왕록」의 존재로 인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⁴⁾ 기존의 연구들이 「빈왕록」 및 그것이 기록하고 있는 1273년 사행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사행의 내용 및 형식과 관련한 것이다. 사행로 및 사행 일정과 고려 측 사행단에 대한 禮數, 이승휴의 서장관으로서의 활약상 등에 대한 내용이 이에 포함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사행이 당시의 고려-몽골 관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한 부분이다. 이와

[지식].

- 4) 이와 관련해서는 「빈왕록」 분석과 이 사행의 의미 분석을 전론으로 하는 연구들 및 이승 휴의 현실·대외의식 등을 논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이 사행을 다룬 연구 등 관련한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다음 논문들이 대표적이다. 김인호, 1997 「이승휴의 역사인식과 현실비판론의 방향」, 『한국사상사학』 9; 김승룡, 2000 「원간섭기 고려지식인의 현실 인식 시고」, 『한국문학연구』 1; 변동명, 2008 「이승휴 빈왕록」, 『한국사시민강좌』 42; 明平 孝, 2009 「이승휴의 『賓王錄』 연구」, 『한문학논집』 28; 진성규, 2009 「이승휴의 『賓王錄』 연구」, 『백산학보』 85; 이형우, 2013 「13세기 고려 지식인 이승휴의 對元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34; 윤은숙, 2013 「大元 使行을 통해 본 李承休의 현실 인식」,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채웅석, 2012 「『제왕운기』로 본 이승휴의 국가의식과 유교관료정치론」, 『국학연구』 21; 森平雅彥, 2004 「『賓王錄』にみる至元十年の遣元高麗使」, 『東洋史研究』 第63卷 第2號(2013 『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 帝國秩序と王國の對応』, 名古屋大學出版會에 재수록) 외. 한편, 1273년 하책봉 사행은 정례적으로 이루어진 사행은 아니지만, 賀禮를 위한 사행으로 의례적 성격이 강한 사행이므로, 정례적·의례적 사행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이 사행을 통해 드러난 몽골의 漢化한 모습이 이승휴를 비롯한 고려 신료들이 몽골을 ‘華’로 인정하게 되는 인식 변화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며, 이 사행이 당시 임연에 의한 원종의 폐위와 몽골 황제에 의한 복위, 이어지는 삼별초 난 등 고려의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고려세자와 몽골공주의 통혼이 성사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1273년 고려 측 賀冊封使의 사행로 · 일정 · 禮數와 관련한 많은 내용을 밝혀졌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빈왕록」이라는 기록 자체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사행이 고려-몽골 관계에서 갖는 의미와 관련해서도 주로 당대 현안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이 시기 유사한 사행의 전체적 양상 속에서, 고려-몽골 관계의 총체적 성격과의 연관성상에서 이 사행의 양상 및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기왕의 연구 성과들에 기반하고 그 한계에 착안하여,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가도록 하겠다. 우선, 이 시기 정례적 · 의례적 사행의 양상 및 형식이 어떠한 내외적 배경 속에서 성립된 것인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 정례적 · 의례적 사행에 보이는 특징적 면모들이 고려-몽골 관계의 총체적 성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데에 유의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종대 정례적 · 의례적 사행 양상 및 그 배경을 검토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문의 첫 번째 장인 제2장에서는 사행의 人選과 관련하여, 1273년 하책봉 사행을 포함하여 원종대 사행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종실 正使 파견 양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그것이 보여주는 원종대 고려-몽골 관계의 단계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이 사행에서 사행단이 경험한 의례, 禮數 등 사행 양상이 동아시아의 사행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으로 몽골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상에 특징적 면모를 보이는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몽골에서 그러한 중국식 의례들이 정비되는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추후 정례적 · 의례적 사행 및 실무적 사행의 전체상을 통해 고려-몽골 관계의 총체적 성격을 살피는 데에

도, 그리고 고려-몽골 관계에 내포된 동아시아적 관계 요소가 도입, 정착되는 과정 및 배경을 추적해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使臣 人選, 宗室 正使 파견의 배경과 의미

원종 14년(1273) 5월, 몽골에서는 황후와 황태자를 책봉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⁵⁾ 고려에서는 원종의 둘째 아들인 順安侯 王悰과 同知樞密院事 宋松禮를 進賀使로 하는 사행단을 보내어 이를 하례하게 했다.⁶⁾ 이 사행의 사신 人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 가운데 한 가지는 宗室이 正使로서 사행단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황후·황태자 책봉이라는 사안이 몽골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사신 선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종실이 正使로서 사행단을 인솔하는 양상은 몽골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사행 양상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⁷⁾ 이 시기 고려-몽골 관계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종실이 사행단을 이끈 경우는 1273년의 하책봉 사행 이외에도 몇 차례 더 보인다. 그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고려 종실이對 몽골 사행단을 이끈 사례

번호	사행 시기	인물	사행 목적
1	고종 26년(1339) 12월	新安公 王侄	전쟁 중 교섭
2	고종 32년 10월 壬午	新安公 王侄	전쟁 중 교섭
3	고종 40년 12월 壬申	安慶公 王涓	전쟁 중 교섭
4	고종 44년 12월	安慶公 王涓	전쟁 중 교섭
5	원종 원년(1260) 4월 丙寅	永安公 王僖	황제 즉위 하례
6	원종 2년 4월 己酉	太子 王謙	아뢰부케 평정 하례

5) 『高麗史』 권27, 원종 14년 5월 壬寅.

6) 『高麗史』 권27, 원종 14년 윤6월 己未.

7) 이러한 점은 이미 기존 연구들을 통해 언급이 되었으나(森平雅彥, 2004 앞의 논문; 윤은숙, 2013 앞의 논문), 그 맥락과 의미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7	원종 6년 정월 乙未	廣平公 王恂	원종 친조시 후의에 대한 사례
8	원종 8년 11월 甲午	安慶公 王涓	신년 하례, 일본초유 관련 보고
9	원종 11년 8월 戊辰	世子 王謙	성절 하례, 배중손 반역 보고
10	원종 13년 정월 甲申	濟安侯 王淑	‘大元’ 국호 제정 하례
11	원종 14년 정월 癸亥	帶方侯 王激	세자 혼사 허락 사례
12	원종 14년 윤6월 己未	順安侯 王悰	황후·황태자 책봉 하례
13	충렬왕 즉위년(1274) 9월 戊戌	濟安公 王淑	공주 下嫁·국왕 작위 계승 사례
14	충렬왕 12년 5월 庚午	濟安公 王淑	황태자 친킴[眞金] 사망 조의
15	충렬왕 18년 윤6월 丙戌	世子 王璋	성절 하례
16	충선왕 즉위년(1298) 정월	平陽侯 王眩	선위 허락 사례
17	충렬왕 복위년(1298) 9월	中原侯 王鼎	복위 사례
18	충렬왕 29년 11월 戊寅	濟安公 王淑	전왕 귀국 요청
19	충숙왕 7년(1320) 6월 己巳	丹陽大君 王珣	황제 즉위 하례
20	충숙왕 8년 3월	丹陽大君 王珣	연호 개정·태후 책봉 하례

* 출전: 『高麗史』, 『高麗史節要』.

고려 종실이 몽골 측에 사신으로 파견된 총 20개 사례 가운데 전쟁 중 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진 초기 4개 사례를 제외하고, 몽골과 講和가 이루어진 1259년 이후 16개 사례 중 절반에 이르는 8개 사례가 원종대 사례라는 점이 주목된다. 첫 번째 사례인 원종 원년(1260) 4월의 사행은 고려-몽골 간 강화가 성사되고 원종이 즉위한 후 처음으로 몽골에 파견한 사행이기도 했다.

몽골과의 관계에서 종실이 正使로서 사행단을 이끌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사례들이 대개 특별한 사안과 관련한 의례적 사행이었다는 점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실들이 사행단을 이끈 사례에는 물론 신년·성절 賀禮와 같은 정례적 사행도 포함되었으나, 황제의 政敵 평정 하례나 왕실 간 통혼 성사에 대한 謝禮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한 하례 혹은 사례를 위한 사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종실을 正使로 파견한 것이 몽골과의 관계 초기,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 사안과 관련한 사행의 격을 높이기 위한 고려 측 人選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외교를 위한 국가 간 사행에서 사신, 특히 正使의 격

은 곧 사신 파견 주체가 상대국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정사의 ‘격’을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드러낼 것인지는 사행의 목적 및 파견 주체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고려 전기, 宋과의 관계에서 파견되었던 사신들의 경우를 볼 때, 고려에서는 그의 가문 배경 및 관품, 학식 등을 사신 人選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⁸⁾ 그런 점에서, 종실을 正使로 파견한 것은 고려의 입장에서 가문 배경이나 관품 등을 기준으로 한 正使의 격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몽골과의 관계에 최대한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종실이 正使로 파견된 사례가 몽골과의 관계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이러한 양상이 관계의 대상이었던 몽골로부터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몽골이 다른 정치단위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개인 간·가문 간 관계로 표현되는 수장 간·지배가문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중시했던 점,⁹⁾ 즉, 몽골의 관계 형성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몽골의 관계 형성 방식에 보이는 특징적 면모와 종실 正使 파견 간 관계는 이러한 사행이 시작된 초기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에서 종실이 사신으로 파견된 최초의 사례는 1339년(고종 26) 新安公 王佺의 사행이다.¹⁰⁾ 이 사행을 비롯해 고종대에는 총 4차례 종실 사신 파견 사례

8) 박용운, 1995·1996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下)」 『한국학보』 21·22.

9) 통흔은 이러한 개인 간·가문 간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였으며, 국왕의 親朝 역시 동아시아 외교전통에서 諸侯의 朝覲으로서의 의미도 갖지만 카안과 그에 신복한 정치단위 수장간의 개인 간 관계 형성의 매개로서의 의미도 강하게 갖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몽골 황제, 황실은 상호 맹약을 통해 의형제, 즉 안다(anda)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누케르(nöker)’, 즉 ‘친구, 벗, 동무’라는 연맹 형식, 그리고 애초에 주인과 노비라는 주종관계로 맺어지는 ‘보꼴(boghol)’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다른 정치단위의 수장, 혹은 그 가문과 개인 간·가문 간 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관계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나 관계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한 가문들은 千戶制, 케식제 등 제국을 구성,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던 제도들의 주된 구성원이 되었고, 이를 통해 그들의 私의 관계는 제국의 公的인 체제, 영역으로 편입, 재편되었다(김호동, 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96-100면).

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행들은 그 사행의 목적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시 전쟁 과정에서 전쟁 종식의 전제조건으로 몽골 측이 요구했던 국왕 親朝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259년 고려-몽골 간 講和는 고려 태자(뒤의 원종)의 入朝를 통해 성사되었고, 그 이전의 전쟁 과정에서 몽골은 끊임없이 양국 간 ‘강화’의 조건으로 고려국왕의 親朝를 요구해 왔다. 몽골에서 정치단위 수장 간의 직접적 관계가 정치단위 간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전쟁을 통해 세력의 규합과 분열이 반복되었던 유목사회의 특성, 그리고 分封을 통해 구성되었던 몽골 국가체제의 분립적·분권적 성격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몽골에서 전쟁 중에 있던 국가 혹은 정치단위와 강화를 맺기 위해서는 그 국왕, 혹은 수장과의 직접적인 관계[개인 간·가문 간 관계] 성립이 중요했고, 그를 표현하는 수단이 곧 수장들이 황제를 직접 면대하여 만나 복속을 표하는 친조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수장 가문의 자제를 몽골에 보내어 入侍하게 하는, 투르카[禿魯花] 파견이 필요했으며,¹¹⁾ 필요에 따라 수장의 친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이에 몽골에서 친조는 諸王·封君이 카안에게 臣服하는 상징이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배반으로 인식되었다.¹²⁾

10) 『高麗史』 권23, 고종 26년 12월.

11) 이러한 투르카[禿魯花] 요구는 ‘納質’이라는 6事의 한 항목으로 고려에 요구되었다. 이는 관계의 유지를 담보하기 위한 ‘인질’로서의 일방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었고, 몽골 제국과 내포적·외연적 관계로 맺어진 정치단위들이 그 지배층의 자제를 보내어 몽골의 지배층으로 훈도되는 과정이기도 했으며, 이들이 제국 중심부에 있으면서 형성한 여러 정치적 관계들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정치적 기반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했다.

12) 칭기스칸代 長子 주치가 병을 이유로 대칸이 소집한 朝會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가 사냥을 즐겼다고 전하여 칭기스칸이 震怒한 일이 있었다[라시드 앗딘(김호동 역주), 2003 『칭기스칸기』, 사계절, 374면; 2005 『칸의 후예들』, 사계절, 189-190면]. 또한 카이두가 쿠빌라이의 쿠릴타이에 병을 평계로 3년 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상 쿠빌라이 카안에 대해 臣服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1310년 카이두의 아들 차파르가 폐전 후 武宗 카이샨에게 親朝한 것은 방침을 바꾸어 臣服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한편 朝覲은 이를 통해 述職이나 王爵의 昇黜도 이루어져 諸王封君의 지위, 권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몽골에서의 朝覲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李治安, 1989 『元代

몽골은 1231년(고종 18) 1차 침입 이후, 고려가 講和를 맺은 상태에서 江華遷都를 단행하자, 이를 이유로 곧 다시 침입해 와서 철군의 조건으로 국왕이 몽골에 와서 직접 황제를 만날 것, 즉, 親朝를 요구했다.¹³⁾ 이는 1차 침입 이후 국왕의 친조 없이 맺은 강화가 강화천도로 그 불안정성을 드러낸 가운데 이루어진 요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몽골의 군사적 침입과 국왕 친조 요구는 계속되었다. 1235년(고종 22)부터 시작된 3차 침입을 마무리하면서, 몽골에서는 고종 26년(1239)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여 국왕이 몽골에 친조할 것을 다시 요구했고, 12월, 고려에서는 新安公 王佺과 少卿 宋彥琦를 몽골에 보냈다.¹⁴⁾ 이후 고종의 둘째 아들이자 원종의 동생인 安慶公 王済 역시 1253년(고종 40)과 1257년, 두 차례에 걸쳐 몽골에 파견되었는데, 이 역시 당시 새롭게 황제위에 오른 憲宗 뭉케가 군사적 침입과 함께 국왕 혹은 왕자(태자인 것으로 생각됨)의 친조를 요구한 데에 따른 것이다.¹⁵⁾ 이를 통해 볼 때, 종실의 사행은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몽골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국왕 친조를 피하면서 몽골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고려 측 임기응변책의 한 가지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고종은 몽골의 사신들이 왕이 江外까지 나와 영접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고 新安公 王佺을 보내어 사신들을 맞이하게 했으며,¹⁶⁾ 몽골 군대가 침입해 와서 국왕과 태자가 직접 항복할 것을 요구했을 때에도 永安公 王僖를 대신 보냈다.¹⁷⁾

이러한 종실의 사행이 고려 측에서 기대한 바와 같이 몽골 측에 대해 국왕이나 태자의 친조 혹은 직접 항복을 온전히 대신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

分封制度研究, 天津古籍出版社, 297-299면을 참조할 수 있다.

- 13) 고종 19년(1232) 11월, 몽골 황제에게 보낸 진정표의 내용 가운데, 황제의 조서 내용을 운운하며 국왕이 직접 朝覲하는 문제와 관련한 고려 측 입장은 표명한 부분이 있는 것을 통해(『高麗史』 권23, 고종 19년 11월), 이에 앞서 고려에 전달된 몽골 황제의 조서에 국왕의 친조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19년 11월 이전, 같은 해 7월에 몽골의 조서가 전달된 바 있다(『高麗史』 권23, 고종 19년 7월 庚辰朔).
- 14) 『高麗史』 권23, 고종 26년 4월, 8월, 12월.
- 15)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8월 己未, 庚午, 10월 辛未, 12월 壬申; 44년 7월 壬申, 12월.
- 16) 『高麗史』 권23, 고종 37년 6월 庚子.
- 17) 『高麗史』 권24, 고종 45년 6월 丙申.

로 보이지는 않는다. 1239년(고종 26) 몽골에 갔던 新安公 王埜은 이듬해 9월에 돌아와서 황제가 국왕의 친조를 요구했음을 다시 전했고,¹⁸⁾ 安慶公 王済은 ‘왕자’였지만, 1257년(고종 44) ‘왕자의 入朝’ 요구에 따른 그의 입조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몽골에서는 다시 태자의 친조를 요구해 왔다. 그리고 태자의 친조를 통해서야 양국 간 講和가 성립될 수 있었다. 즉, 당시 몽골 측에서는 국왕·태자와의 직접적 관계를 요구했을 뿐, 종실을 사신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전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고려 측은¹⁹⁾ 그러한 몽골 측 요구의 맥락을 ‘고려의 입장’에서 조율하여 종실을 사신으로 파견했고, 이러한 양상은 강화 이후에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몽골에 入朝하여 강화를 성사시킨 후 즉위한 원종은 세조 쿠빌라이의 즉위를 하례하기 위해 그가 몽골에 보낸 즉위 후 첫 사행단을 종실 永安公 王僖 인솔 하에 파견했으며,²⁰⁾ 얼마 후 쿠빌라이가 즉위 과정에서 경쟁했던 아리부케 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하례하기 위한 사행단은 아들이자 태자였던 王謙을 正使로 삼아 보냈다.²¹⁾ 그리고 위 표에 보이듯이 이러한 사행은 이후에도 몇 차례 이어졌다. 스스로 친조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 통혼과 같은 몽골적 관계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고려-몽골 관계에서, 원종은 전통적으로 국가 간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수단이었던 사행, 특히 정례적·의례적 사행의 격을 높이는 것을 통해 몽골과의 講和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행의 격을 높이는 것은 이전 시기 사신 인선 기준에 비추어 사행단을 이끄는 正使의 격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 ‘고려에서 인식한’ 몽골적 맥락에서 종실을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종실의 正使 파견은 스스로 태자로서 入朝한 경험도 있고, 자신의 입조가 이루

18) 『高麗史』 권23, 고종 27년 9월. 이때의 국왕 친조 요구는 이듬해인 고종 28년(1441) 4월, 고려에서 종실 영령공 왕준을 왕의 아들이라 하여 양반직 자제 10명과 함께 몽골에 독로화로 보낸 것으로 무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 강화 이후에도 고려 측에서는 국왕의 친조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종 5년 몽골 측 친조 요구에 대한 고려 측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高麗史節要』 권18, 원종 5년 5월).

20)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 4월 丙寅.

21) 『高麗史』 권25, 원종 2년 4월 己酉.

어지기까지의 논의 과정을 알고 있었던 원종이 자신의 입장에서, 고려가 경험해 왔던 중국왕조와의 관계 및 사행 양상에 몽골의 관계 형성 방식에 보이는 특징적 면모를 일정부분 수용하고 절충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보다시피, 종실을 正使로 파견하는 사례는 원종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충렬왕대 이후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가지는 충렬왕대 이후로는 국왕 스스로가 몽골황실과 통혼을 하기도 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親朝에 임하게 되는 등, 개인 간·가문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몽골적 관계 요소들이 전면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굳이 종실의 正使 파견이라는 절충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고려와 몽골의 관계에서 정례적·의례적인 사행이 갖는 비중과 의미가 축소되어가는 양상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점은 사행 자체에서 실무적 사행의 비중과 의미가 증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양국 간 관계를 안정시키고, 안정된 관계를 주기적으로 상호간에 환기·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이 사행, 특히 정례적·의례적 사행 밖에 없었던 시기의 국가 간 관계에서와 달리, 고려-몽골 관계에서는 고려 국왕이 몽골 황제·황실과 직접 형성한 관계 등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른 수단들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고 등장하게 되면서, 사신의 격을 통해 사행의 격을 높이고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갖는 비중이 이전에 비해 축소된 상황과 관련된다.

충렬왕대 이후 종실의 正使 파견 사례가 확연히 줄어들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고려-몽골 관계에서 종실이 갖는 의미 및 비중 문제와 관련된 측면이다. 고려-몽골 관계는 국가 간 관계 요소와 개인 간·가문 간 관계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였고, 이러한 관계에 기반해 형성되었던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 아래에서 고려국왕의 위상은 상대화하였다. 고려국왕은 스스로 황제·황실과의 관계를 통해 권력을 부여받아 행사하기도 했지만, 황제·황실과의 개인 간·가문 간 관계는 다원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왕 이외의 다른 종실도 그러한 관계를 통해 권력을 부여받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려-몽골 관계 및 그에 기반한 권력구조는 1269년(원종 10) 원종 복위 과정을 통해 성립되었으나, 고려국왕과 신료들이 이러한 몽골과의 관

계 및 그에 기반한 권력구조의 특징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려국왕과 신료들이 이러한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의 특징을 온전히 인지하게 된 것은 1298년 충렬왕과 충선왕 간 重祚 과정을 통해서였다. 이를 통해 고려국왕과 신료들은 고려국왕이 황제와 형성한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왕이 폐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며, 이후 충숙왕대 발생했던 濬王 옹립운동의 과정은 왕실 직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황제·황실과 형성한 관계가 국왕-황제 간 관계보다 더 밀접하고 강고한 경우 그 관계를 기반으로 국왕 위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²²⁾ 이러한 상황에서 국왕이 몽골에 파견하는 중요한 사행을 종실이 인솔하게 하는 것은 다소간 정치적 부담을 안은 행위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충렬왕대 이후 종실을 正使로 파견하는 사례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에 대한 인식 문제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한다.

요컨대 1273년 賀冊封 사행을 비롯한 원종대 對 몽골 사행에 두드러지는 종실 正使 파견 양상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가 간 관계에서의 사행 양상과 몽골적 관계 형성방식에서 비롯된 요소가 ‘고려의 입장에서’ 절충되어 결합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몽골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고려와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몽골과 다분히 동아시아적 관계의 맥락에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던 고려 사이에 아직까지 온전히 동의, 정착되지 않은 고려-몽골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그러한 관계를 바라보는 원종과 고려 측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²³⁾ 이렇게 원종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수장 개인·수장 가문 간의 직접적 관계 형성과 유지라는 몽골적 관계 요소는 그 자체로 기능하기보다는 정례적·의례적 사행이라는 국가 간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이러한 양상은 충렬왕대 이후 왕실 간 통혼이나 국왕 친조와 같은 직접적 관계들이 고려-몽골 관계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점차 줄어들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이상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이명미, 2012 앞의 박사학위논문 참조.

23) 원종대 고려-몽골 관계에 대한 몽골 측, 고려 측 입장 차이와 관련해서는 이명미, 2013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의 성립: 元宗代 고려-몽골 관계와 권력구조의 변화」『한국사연구』 제162호 참조.

3. 使行 儀禮, 중국식 朝儀 적용의 배경과 양상

1273년 賀冊封 사행단이 몽골 조정에서 경험한 의례 절차, 禮數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의례 절차와 대동소이한 것이었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미 상세하게 밝혀진 바와 같다. 이 사행과 관련한 기록인 이승휴의 「賓王錄」에 묘사된 바, 국왕의 표문 전달과 연회, 그에 대한 謝表 전달 등이 사행 일정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역시 몽골과의 관계 이전, 고려에서 중국에 보낸 사행단의 구성 및 활동 양상과 유사하다.²⁴⁾

고려가 몽골에 이러한 의례적 사행단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몽골 전쟁이 종식되고 양국 간에 講和가 형성된 직후인 1260년, 世祖 쿠빌라이의 황제 즉위를 하례하기 위한 사행부터이다.²⁵⁾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종은 永安公 王僖를 보내어 쿠빌라이의 즉위를 하례했고, 이에 대해 쿠빌라이는 원종에게 虎符와 국왕 印章 및 曆을 하사하는 한편으로 “옛날의 좋은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 年號를 제정하여 中統이라 했음을 고려에 알려 왔다.²⁶⁾ 이에 고려에서는 다시 연호 제정을 하례하고 호부 및 인장을 준 것에 사례하는 사신을 파견했다.²⁷⁾ 한편, 賀正使 · 賀聖節使와 같은 정례적 사행은 사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1263년에 이르러서야 파견되기 시작했다. 1264년의 신년을 하례하기 위한 사행이 1263년 출발했으며,²⁸⁾ 하성절사는 1265년 성절에 처음 파견되었다.²⁹⁾

이때에 이르러서야 고려 측 정례적 사행이 파견되기 시작했던 데에는 쿠빌라이 즉위 초반의 여러 정치 상황들이 작용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원종 5년 (1264) 5월, 쿠빌라이는 조서를 통해 원종의 친조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24) 이승휴(진성규 역), 2009 앞의 책. 한편, 몽골과의 관계 이전, 고려에서 중국에 보낸 사행의 양상과 관련해서는 최해의 글이 참조된다(崔灝, 『拙藁千百』 卷2, 「送鄭仲孚書狀官序」).

25)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 4월 丙寅.

26)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 8월 壬子.

27)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 9월 己巳.

28) 『高麗史』 권25, 원종 4년 10월 壬戌.

29) 이 사행과 관련한 기록은 『元史』에만 보이는데, 이때의 고려 측 사신은 榮胤 伯이었다고 한다(『元史』 권6, 세조 至元 2년 6월 己卯).

에는 즉위 후 “정벌관계로 겨를이 없어서 예전들을 제대로 거행하지 못했는데, 근래 서북의 제왕들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귀부하여 금년에 왕공들과 지방장관들이 上都[開平府]에 모여 조회할 것이니” 고려국왕도 지체하지 말고 와서 조회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³⁰⁾ 쿠빌라이가 언급한 “정벌” 및 “서북 제왕의 귀부”는 쿠빌라이의 즉위 과정에서 그와 경쟁했던 동생 아릭부케와의 전쟁 및 승리, 그리고 1262년에 발생했던 한인군벌 이단의 난 진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³¹⁾

그런데, 초기에 이루어졌던 각종 賀禮를 위한 의례적 사행단의 禮數, 그리고 1264년부터 시작된 초기 고려 측 정례적 사행단의 몽골에서의 활동이나 그와 관련한 의례 등이 「빈왕록」에 보이는 것처럼 전통적인 ‘중국식’ 의례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몽골에서 관련한 朝儀의 정비는 1269년(世祖 至元 6)에 시작되어 2년 후인 1271년에 완성되었고, 이러한 조의가 실제로 사용된 것은 같은 해 8월의 聖節부터였기 때문이다.³²⁾ 따라서 그 이전에 고려에서 파견되었던 하정사나 하성절사 등이 몽골 조정에서 참가했던 의식에서의 의례들은 「빈왕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중국식으로 정비된 조의는 아니었을 수 있다.

1271년 聖節부터 새롭게 제정된 조의가 사용되었다고 했을 때, 사료 상 확인되는 사행을 기준으로 고려의 사신들이 몽골에서 그러한 조의를 경험한 것은 1272년 신년 하례 때 부터였을 것이다.³³⁾ 몽골은 조의가 정비된 이후인 世祖 至

30) 『高麗史』 권26, 원종 5년 5월 辛巳.

31) 아릭부케와 그를 추종했던 諸王들이 쿠빌라이의 조정에 와서 항복한 것은 세조 中統 5년(1264) 7월의 일이지만(『元史』 권5, 세조 中統 5년 7월 庚子), 이미 1263년 봄에 아릭부케 세력은 와해되었다. 쿠빌라이의 즉위 과정에서 일어났던 아릭부케와의 경쟁과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최근의 연구로 김호동, 2007 앞의 책 참조, 이단의 난 및 그 여파와 관련해서는 杉山正明(임대희 외 옮김), 1999 『몽골 세계제국』, 신서원: 모리스 로사비(강창훈 옮김), 2008 『쿠빌라이 칸, 그의 삶과 시대』, 천지인 등 참조.

32) 『元史』 권67, 志18 禮樂1.

33) 1271년 성절에 고려에서 하성절사를 파견한 기록은 고려와 몽골 양측 사료에 모두 보이지 않는다. 1272년 신년 하례를 위한 하정사는 전년 11월에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신년 하례와 함께 세자의 혼사를 허락해준 것에 대한 사례를 겸하였다(『高麗史』 권27, 원종 12년 11월 癸未).

元 8년(1271) 12월, ‘大元’이라는 國號를 제정했으며,³⁴⁾ 고려에서는 이듬해 초에 齊安侯 王淑과 추밀원부사 송송례를 進賀使로 하는 사행단을 보내어 국호 제정을 하례했다.³⁵⁾ 특히 후자의 경우는 조의 정비 과정을 일단락 짓는 중국식 국호의 제정에 대한 進賀使였다는 점에서 고려 측에서도 사행단을 구성하는 데에 특별히 유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73년 賀冊封 사행과 마찬가지로 이 사행 역시 종실이 正使로서 사행단을 이끌었으며, 1273년 賀冊封 사행에 수행했던 송송례가 副使로 함께 하고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

이렇게 볼 때, 1273년의 賀冊封 사행은 고려 측 사행단이 중국식으로 정비된 몽골의 조의를 최초로 경험한 사행은 아니었다.³⁶⁾ 그러나 조의의 완성이 의례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러한 의례가 실행되는 공간의 확보까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73년 賀冊封 사행은 이전의 유사한 의례적 사행에 비해 공간적, 의례적으로 새롭게 정비된 중국식 조의가 제대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사행단의 일정 가운데, 8월 28일에 행해진 長朝殿 낙성식에서의 의례에 대해, 참석했던 고려의 父老들이 “병란 이후 이와 같은 禮數는 아직까지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했다는 「빈왕록」의 기록을³⁷⁾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父老들은 장조전 낙성식 이전, 같은 사행에서 8월 9일과 25일, 각기 황후와 황제에게 하례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감탄은 단지 정비된 ‘朝儀’에 대한 것 만은 아니었으며, 장조전이라는 공간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행의 副使였던 송송례가 직전인 1272년 초, 朝儀 정비 이후 이루어진 몽골의 국호 제정에 대한 進賀使로도 파견된 바 있었던 점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장조전은 大都城의 正殿인 大明殿의 異稱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³⁸⁾ 그 명칭이 『元

34) 『元史』 권8, 세조 至元 8년 11월 乙亥.

35) 『高麗史』 권27, 원종 13년 정월 甲申.

36) 1272년 초 이후에도 고려 측 정례적·의례적 사행으로서 동년 7월의 하성절사, 11월의 하정사 파견이 있었으며, 1273년 초에 세자의 혼사를 허락해 준 것에 사례하는 사행이 파견되었다(『高麗史』 권27, 원종 13년 7월 己卯, 11월 戊寅: 14년 정월 癸亥).

37) 이승휴(진성규 역), 2009 앞의 책, 94면.

38) 大都 건설은 1266년 쿠빌라이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으며, 皇城의 건축은 1271년에 본격화

史』 등 몽골 측 사료에는 보이지 않지만, 『高麗史』, 『高麗史節要』에는 충렬왕이 친조했을 당시 황제의 연회가 배설되었던 장소로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고려 세자와 몽골 공주의 혼례가 거행되기도 하였다.³⁹⁾

중국식 의례를 구현하고 동아시아의 전통적 사행 양상을 계승한 사행이 이 시기 고려-몽골 간의 전형적이고 유일한 형태의 사행은 아니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에는 일본 초유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 사행이 번다하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행은 의례·격식을 갖추고 표문을 비롯한 문서 전달과 연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례적 사행과는 다른 양상을 띠었다.⁴⁰⁾ 그리고 몽골에 의해 원종이 복위하고 고려왕실-몽골황실 간 통혼이 약속되는 등 고려-몽골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존 관계에 비추어 다소 이질적인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고려-몽골 관계 형성 초기, 이 관계를 매개했던 사행이 전통적인 사행 양상에 따라 정례적·의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 형식적·의례적 측면이 ‘정비되어가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이 시기 원종 및 고려 신료들이 몽골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들에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이는 이 시기 몽골과의 관계에 내재한 이질적 요소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고려 신료들이 몽골을 ‘華’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賓王錄」에 기록된 1273년 고려 측 賀冊封 사행이 동아시아의 전통적 사행 양상을 계승하고 있었던 것은 직전인 1269년부터 1271년까지 이루어진 몽골 內 중국식 朝儀 정비의 결과물이었으며, 이 조의 정비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중국식 국호 제정 및 대도성 건축 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몽골에서 조의 정비를 비롯한 일련의 ‘한법’ 도입이 이루어진 배경은 크게 두 가지

했다. 大都·上都 등 몽골의 도읍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陳高華·史衛民, 2010 『元代大都上都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39) 長朝殿은 1279년(충렬왕 5)과 1296년, 충렬왕이 몽골에 입조해 있을 때 참여했던 황제의 연회가 배설되었던 장소로 기록되어 있다. 충렬왕 5년의 입조는 전년, 김방경 무고사건과 관련한 사후처리 문제로 인한 친조였으며, 동왕 22년의 친조는 세자의 혼례를 치르기 위해 제국대장공주와 함께 한 친조였다(『高麗史』 권29, 충렬왕 5년 정월 丁卯: 권31, 충렬왕 22년 11월 甲申, 己丑, 甲午, 12월 己亥, 壬子).

40) 이에 대해서는 이명미, 2014 앞의 발표문 참조.

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세조 쿠빌라이의 ‘중국 황제’로서의 면모와 관련한 부분이다. 쿠빌라이는 집권 초기부터 중서성, 추밀원, 어사대 등 중국식 통치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통치기반을 다졌고, 이러한 일련의 ‘한법 수용’은 ‘以漢法治漢地’, 즉 漢地 통치를 위한 효율적 제도 및 방식 채택으로서의 측면을 갖는다. 그러한 맥락에서, 1269년부터 시작된 중국식 조의 정비 역시 많은 연구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쿠빌라이가 자신의 집권을 계기로 제국이 사실상 ‘분열’하게 되면서 통치의 주공간이 된 漢地 통치를 위해, 그를 위해 포섭해야 할 漢人们, 그리고 고려를 포함하여 몽골이 관계했던 동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해 스스로의 ‘중국 황제’로서의 모습을 강조하여 드러내 보이기 위해 단행한 정책으로서의 측면을 갖는다. 쿠빌라이가 이 즈음부터 남송정벌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점도 한지 통치를 공고히 해야 할 그의 필요를 보여준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朝儀 정비를 마무리하면서 제정된 중국식 국호인 ‘大元’이 카안이 직접 통치하는 공간인 카안 울루스, 중국의 이른바 ‘元朝’ 영역 만을 지칭하는 국호가 아니라, 러시아와 중동지역의 여러 울루스들, 이른바 4대 칸국 등을 아우르는 영역에 대한 국호인 ‘예케 몽골 울루스(Yeke Mongol Ulus)’, 즉 대몽골제국의 동의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쿠빌라이의 집권으로 제국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 ‘변용’된 것이며, 쿠빌라이가 한지 통치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몽골제국 전체의 대칸으로서의 면모와 지향을 방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⁴¹⁾ 이렇게 볼 때, ‘大元’ 국호 제정에 앞서 이루어진 朝儀 정비 역시 단지 한지 통치를 위한 정책으로서 뿐 아니라 대몽골제국 통치와 관련한 맥락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식 조의 정비가 진행되었던 시점은 쿠빌라이 즉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릭부케와의 경쟁은 일단락되었지만⁴²⁾ 서방 울루스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혹은 새롭게 축발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쿠빌라이와 아릭부케의 경쟁 과정에서 쿠빌라이 편에 섰던 차가타이 울루스의 알구가 사망한 후, 쿠빌라이는

41) 김호동, 2002 「몽골제국사 연구와 ‘集史’」 『경북사학』 25.

42) 아릭부케는 1264년 여름에 투항했다(『元史』 권5, 세조 中統 5년 7월 庚子).

차가타이 울루스의 칸으로 바らく 임명해 보냈으나, 그는 곧 쿠빌라이에게 반기 를 들었고,⁴³⁾ 이는 중앙아시아의 정세를 급변시키면서, 그간 세력을 잊고 있었던 우구데이 계열, 카이두의 부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카이두는 1268년 쿠빌라이와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1269년에는 차가타이 울루스의 바락, 주치 울루스의 뭉케 테무르와 함께 카안 쿠빌라이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탈라스에서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이전까지 카안의 영역으로 공동행정 지역이었던 사마르칸트, 부하라 등의 정주지역의 이익을 자기들끼리 분배했다. 이 쿠릴타이, 즉 ‘탈라스 회맹’은 쿠빌라이의 몽골제국 카안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카안의 권위에 대한 도전적 성격을 갖는 것은 분명했다. 이에 1271년, 쿠빌라이는 카이두에 대응하기 위해 그의 넷째 아들인 노무간을 알말릭으로 보냈으며,⁴⁴⁾ 이 후에도 양자 간에는 수차례 전쟁이 이루어지는 등 중앙아시아의 카이두라는 존재는 쿠빌라이에게 있어 그의 집권 기간 내내 매우 중요한 화두였다.⁴⁵⁾ 쿠빌라이는 이들과의 관계를 제국의 ‘분열’ 신호로 보고 ‘단념’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이 제국 내에서 통합하고 제압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관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즉, 1260년대 중후반 쿠빌라이 정권의 과제는, 물론 漢地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카이두 등과 같이 분기해 나가는 종왕 세력들을 제압하고 권력을 집중시키는 문제, 그리하여 대몽골제국의 카안으로서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제국의 한편에서 카안의 권위와 관련한 심각한 도전이 발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이 수행, 계획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진 朝儀 정비는 위의 상황과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었을까? 양자 간 연계성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시기 조의 정비를 둘러싼 쿠빌라이 정권의 지향 혹은 필요를 이해하고자 할 때 주목되는 것이 조의 정비 및 ‘大元’ 국호 제정을 마무리하며 이루어진

43) 라시드 앗딘(김호동 역주), 2005 앞의 책, 241-242면.

44) 위의 책, 396면.

45) 이상 쿠빌라이대 중앙아시아의 상황과 카이두의 부상 및 쿠빌라이 정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Michal Biran, 1997 *Qaidu and the Rise of the Independent Mongol State in Central Asia*, Curzon을 참조할 수 있다.

황후·황태자 책봉이다. 이는 「빈왕록」이 기록하고 있는 1273년 고려 측 사행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몽골에서는 고려에 관련 소식이 전해지기 두 달 전인 世祖 至元 10년(1273) 3월, 황제 쿠빌라이의 부인 차부이[察必]와 아들 친김[眞金]을 황후와 황태자로 책봉했다.⁴⁶⁾ 세조 쿠빌라이의 ‘가장 큰’ 부인인 차부이는 몽골황실의 대표적 媚族인 쿵크라트 알치[按陳] 노얀의 딸로, 쿠빌라이가 황제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혼인하여 친김을 비롯한 아들들을 낳았으며, 1260년 쿠빌라이가 즉위한 후 황후가 되었다.⁴⁷⁾ 친김은 쿠빌라이의 적자로, 1262년에 燕王에 봉해지고 中書令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에는 板樞密院事를 겸하였다. 1286년 사망 당시 향년 43세였다고 한다.⁴⁸⁾ 즉, 이들은 쿠빌라이가 황제위에 오르면서 이미 황후가 되었고 장성한 황제의 적자로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책봉’은 쿠빌라이가 즉위한 지 13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다.

황후와 황태자에 대한 책봉이 이때에 와서야 이루어진 것은 우선 관련한 의례들이 1271년에 이르러서야 정비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1269년에 시작되어 1271년에 완성된 조의에는 元正受朝儀, 天壽聖節受朝儀, 郊廟禮成受賀儀, 皇帝卽位受朝儀, 羣臣上皇帝尊號禮成受朝賀儀, 册立皇后儀, 册立皇太子儀 등이 포함된다.⁴⁹⁾ 이러한 의례들이 모두 제정된 후인 至元 8년(1271) 12월, 쿠빌라이는 국호를 ‘大元’으로 바꾸었으며 至元 10년(1273) 3월에는 새롭게 마련된 조의에 따라 황후와 황태자를 책봉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책봉이 단지 조의 정비로 표현되는 漢法 도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이 가운데 특히 황태자 책봉은 단지 의례적인 과정을 넘어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1273년 친김의 황태자 책봉은 몽골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황태자 책봉이었는데, 그 배경과 관련하여 책봉문에서는 “태조황제의 유훈에 적자 중에서 능히 뒤

46) 『元史』 권8, 世祖 至元 10年 3月 丙寅.

47) 『元史』 권114, 列傳1 后妃1 世祖 昭睿順聖皇后.

48) 『元史』 권114, 列傳2 裕宗.

49) 『元史』 권67, 志18 禮樂1.

를 이어 황통을 이을 수 있는 자를 미리 뽑아 정하라” 하였고, 이에 “위로는 祖宗의 큰 계책[宏規]을 따르고 아래로는 형제[昆弟]가 모두 동의한 뜻을 싉아 이에 燕邸를 나아가게 하여 너[친김]를 황태자로 세운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근래 儒臣들이 “국가가 태자[儲嗣]를 정립함에 미땅히 册命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典禮”라고 하니, 이에 따라 친김을 황태자로 ‘책봉’한다고 하였다.⁵⁰⁾ 즉, 쿠빌라는 이 황태자 책봉이 태조황제, 즉 칭기스칸의 遺志를 따르는 것이라 하여 그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册命을 내리는 것은 중국의 典禮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몽골에서의 카안위 계승과 관련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기는 하지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몽골에서는 카안이 지명한 후계자에게 그의 계승자격을 확정하는 특별한 작위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가 없었다. 이는 단지 소극적인 의미의 ‘不在’가 아니라, 몽골의 카안위의 계승 과정에서는 선대 카안의 遺志 뿐 아니라 쿠릴타이를 통해 구현되는 宗王들의 동의와 추대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었으며,⁵¹⁾ 이러한 점은 제국을 황금씨족의 共治 대상인 家產으로 인식했던 몽골의 유목 정치체로서의 권력관념과 관련된다. 또한 새로운 카안이 선정되는 과정에는 대상자의 실력, 군사적·정치적 기반 등이 함께 작용하였으므로, 몽골에서의 카안위 계승은 적장자 계승 원칙이 아닌 적임자 계승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²⁾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카안이 차기 카안위 계승자와 관련해 자신의 ‘遺志’를 남기는 것 이상으로, 예컨대 ‘책봉’과 같은 형식을 통해 자신이 지명한 후계자에게 ‘황태자’로서의 위상을 미리 부여하여 그의 카안위 계승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는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제국 공치관념, 가산관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구조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50) 『元史』 권115, 列傳2 裕宗.

51) 이 후자의 측면은 단지 명목상, 형식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작동하였다(Elizabeth Endicott-west, 2013 “Imperial Governance in Yüan Tim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Harvard-Yenching Institute).

52) 김호동, 1989 「고대 유목국가의 구조」 『강좌 중국사』Ⅱ(서울대학교동양과학연구회 편), 지식산업사; 1999 「몽고제국의 형성과 전개」 『강좌 중국사』Ⅲ(서울대학교동양과학연구회 편), 지식산업사.

책봉문에서 쿠빌라이는 이 책봉이 있기에 앞서 ‘형제들’ 즉 종왕들의 동의하에 친킴을 燕王으로 삼아 후계자로 세웠음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친킴을 燕王에 봉한 것은 그의 후계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확정하는 것이기보다는 그의 형제들인 망갈라와 노무간이 각기 安西王과 北平王의 왕호를 받아 섬서와 사천 등 ‘서쪽 방면’과 몽골 본토에 해당하는 ‘북쪽 방면’에 出鎮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⁵³⁾ 친킴의 관할 영역이 제국의 중심부인 華北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中書令이나 板樞密院事 겸임이 제국 중심부에서의 정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친킴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후계자의 지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제들’의 동의 역시 그의 차기 카안위 계승에 대한 동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쿠빌라이의 뜻이라는 명분이, 그리고 燕王으로서 중서령과 판추밀원사를 겸하면서 친킴이 쌓은 정치적·군사적 기반이 그의 카안위 계승에 유리한 기반으로서 작용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한 것이 카안위 계승자와 동일시되는 어떤 제도적 지위는 아니었으며, 친킴이 카안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쿠릴타이를 통한 종왕들의 추대와 동의라는 또 하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1273년 쿠빌라이가 적자 친킴을 ‘황태자’에 ‘책봉’한 것은, 차기 카안위 계승권자를 둘러싼 두 가지 다른 방향성을 갖는 권력관념 가운데 한 가지, 선대 카안의 遺志를 통해 표현되는 현재 카안으로의 권력 집중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그의 후계자 지명을 보다 확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단지 형식, 보여주기 위한 의례를 넘어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렇게 몽골의 권력관념에 반하는 장자계승의 관례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확정하려는 상황에서 쿠빌라이는 이념적으로 칭기스칸의 유지를 끌어오는 한편으로 儒臣들의 말을 빌어 그 과정에 다분히 ‘형식적으로’ 册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언사를 담았다. 표면적으로 이는 儒者들이 이야기한, 그야말로 ‘형식’일 뿐이라는 듯한 뉘앙스를 띠며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형식’은 단순한 ‘전례’ 및 의례의 구현

53) 杉山正明(임대희 외 옮김), 1999 앞의 책. 몽골에서의 宗王 出鎮에 대해서는 李治安, 1989 앞의 책, 194-219면을 참조.

을 넘어 장자 계승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 나아가 권력의 집중을 제도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실질적 의미를 갖는 정치적 행위였다.⁵⁴⁾

요컨대 1269년에 시작된 朝儀 정비에 이어지는 1273년 황태자 책봉은 몽골 카안과 그 일족이 한지 통치에 걸맞는 ‘중국 황제·황실’로 거듭나는 과정을 의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제국 통치권 계승 과정에서 다른 종왕들의 동의 여부가 갖는 비중을 축소시키고 현재 황제의 결정이 갖는 비중을 확대시킴으로써 정권을 안정시키고 권력의 집중을 지향하는, ‘大元, 예케 몽골 울루스 (Yeke Mongol ulus)의 대칸’으로서의 쿠빌라이 정권이 당면해 있던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응책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갖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비된 몽골의 ‘朝儀’는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측 사행단에 대한 의례, 禮數에도 반영되어⁵⁵⁾ 이를 경험한 고려 신료들이 몽골을 인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으로, 고려 내의 의례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의례 정비는 몽골 내에서의 정비에 그치지 않고, 고려 내의 의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관련하여 1273년 聖節 賀禮에 대한 기록이 주목된다. 이때 고려에서는 상장군 金侁을 賀聖節使로 파견했는데,⁵⁶⁾ 이해의 성절은 8월

54) 물론 황태자 책봉을 둘러싼 쿠빌라이의 이러한 정치적 의도가 그의 지향대로 구현되어 몽골 사회에 정착했던 것은 아니다. 관련한 쿠빌라이대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진열, 2003 「쿠빌라이 시기 皇太子制度와 그 성격」『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논집』 27 참조.

55) 그러한 의례적 측면과 관련해서, 고려 賀冊封使를 맞이하고 수행했던 몽골 측 館伴使 한림학사 侯友賢의 존재도 주목된다. 그는 自敍에 따르면 5살에 六經을 통달함에 先代 황제가 칙명으로 한림원에 소속시켰다고 하는데, 「빈왕록」에는 이승휴가 그와 주고받은 시문들이 다수 실려 있다. 이 侯友賢이라는 인물은 世祖 至元 6년, 몽골에서 朝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前代의 朝儀를 제도화하여 실행하기 위해 소집된 유생들 가운데 한 명인 侯祐賢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생각된다(森平雅彥, 2004 앞의 논문). 侯祐賢은 함께 소집된 다른 유생들과 함께 金의 故老 烏古倫居貞, 完顏復昭, 完顏從愈, 葛從亮, 于伯儀 및 國子祭酒 許衡, 太常卿 徐世隆을 따라 여러 古典을 稽하고 時宜를 참작하여 제도를 정하여 익혔으며, 이후 世祖 至元 8년 2월 朝儀를 관掌하는 侍儀司가 설립되면서 그 관직에 임명되었는데, 侯祐賢은 右侍儀副使에 임명되었다. 즉, 몽골의 중국식 朝儀 정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직접 고려 사행단의 館伴으로서 관련한 일정들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56) 『高麗史』 권27, 원종 14년 7월 庚子.

28일로, 앞서 賀冊封使로 갔던 이승휴 일행도 아직 몽골에 있었던 만큼 「빈왕록」에도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다.⁵⁷⁾ 성절 하례는 前日 낙성식을 했던 長朝殿에서 이루어졌으며 관련한 제도와 禮數는 장조전 낙성식에서의 그것과 동일했다고 한다. 당시 賀冊封使로 갔던 王悰도 성절 하례 의식에 참석하여 성절을 하례하는 私表를 올렸으며, 이는 이승휴가 작성한 것이었다. 즉, 이 성절 하례 역시 새롭게 정비된 중국식 朝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이처럼 몽골에서 정비된 중국식 의례에 따라 성절 하례가 이루어졌던 것과 동시에, 고려에서도 몽골 황제의 성절을 하례하는 의식이 거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高麗史節要』에는 원종 14년(1273) 8월, “왕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황제의 탄일을 축하했는데, 다루가치가 그 관속들을 거느리고 오른쪽에 섰다. 상장군 강윤소도 그 무리를 거느리고 호복으로 바로 들어와서 스스로 客使인 척하며 왕을 보고도 절하지 않았다. 왕이 노했지만 제어하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⁵⁸⁾ 이는 고려국왕이 황제의 ‘제후’로서 그 誕日을 축하하는 몽골 조정에서의 하례 의식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사신을 보내어 대리하게 하는 한편으로, 고려에서 그를 하례하는 의식을 직접 거행하고 있는, 즉 遙賀하는 모습에 대한 기록이다.

고려전기의 국왕들은 新年, 冬至, 국왕 誕日 등의 節日에 신하들로부터 朝賀를 받았을 뿐 황제에게 遙賀하는 의례를 거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몽골과의 관계 형성 이후, 고려의 朝賀 의례에는 국왕이 신하들로부터 조하를 받는 ‘受朝賀’에 더하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황제에게 遙賀하는 의례가 추가되었다. 이는 고려국왕이 고려의 군주인 동시에 몽골 황제의 제후이기도 한 복합적 위상이 의례를 통해 구현된 것으로, 이 시기 고려 국가·국왕 위상의 특징적 면모를 잘 보여준다.⁵⁹⁾

위의 기록은 고려국왕의 遙賀와 관련하여 처음 나타나는 기록이기는 하지만,

57) 이승휴(진성규 역), 2009 앞의 책, 97-100면. 이에 따르면 당시 고려 측 奉表使는 金哲이었으며 서장관은 兼直史官 李仁挺이었다고 한다.

58) 『高麗史節要』 권19, 원종 14년 8월.

59) 몽골과의 관계 형성 이후 변화한 朝賀 의례의 구체적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종석, 2010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51 참조.

『高麗史』·『高麗史節要』의 朝賀儀 관련 자료들이 통상적이지 않은 특례적 사례들 위주로 기록되고 있는 경향성을 고려할 때,⁶⁰⁾ 이때에 처음으로 국왕 遙賀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⁶¹⁾ 위 사례가 기록된 것은 국왕의 聖節 遙賀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고려인인 강윤소가 몽골의 사신이라 하여 왕에게 예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에 고려국왕의 遙賀 의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누구의 의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시작은 사료 상 고려에서 몽골에 賀正使와 賀聖節使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1264년 新正 이후 1273년 聖節 이전의 어느 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례 적용 양상의 특징적 면모가 발생하게 된 시점 및 배경과 관련하여, 遙賀 사례는 아니지만 1269년 원종 복위 과정에서 국왕이 몽골 황제에게 遙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 원종이 복위한 후, 몽골 사신은, 아마도 원종 복위 관련 詔書를 전달한 黑的은 백관들이 하례하는 것을 보기 를 청했고, 이에 원종은 백관의 하례를 받기에 앞서 紫袍를 입고 북쪽을 향해 遙謝하였다.⁶²⁾ 이때 몽골 사신이 백관의 하례 의식을 보기를 청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물론 그가 원종의 복위를 위해 파견되었던 만큼 그 과정을 완료하기 위한 요청이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원종이 몽골 사신이 보는 가운데 백관들로부터 그의 복위에 대한 하례를 받기 위해, 그에 앞서 자신을 복위시켜 준 황제에게 遙謝를 해야 하는 상황을 발생시켰다.

한편, 이 시점이 몽골에서도 朝儀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였고, 조의 정비의 초기 작업은 여러 前例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두고 볼 때,⁶³⁾ 이 때 몽골 사신의 요청이 황제에 대한 遙謝가 아니라, 백관들의 賀禮였다는 점은 그 요구에 儀禮 참조 목적도 있었던 것이 아닌지 추측하게 한다. 관련하여 이때의 몽골 사신 黑赤은 임연에게 원종을 복위시키도록 한 후, 연회에서 높은 자리

60) 위의 논문 참조.

61) 新正에 행해진 遙賀와 관련해서는 1275년(충렬왕 원년)에 관련 기록이 처음으로 보인다 (『高麗史』 권28, 충렬왕 원년 춘정월 癸酉朔).

62) 『高麗史』 권26, 원종 10년 11월 甲子.

63) 『元史』 권67, 志18 禮樂1.

를 두고 원종과 서로 양보하여 東西로 대면하기도 하였으며,⁶⁴⁾ 이후 충렬왕이 즉위한 후 몽골 측에서 관제 개편을 비롯한 요구들을 해 왔을 때, 고려의 관제가 ‘참월한’ 상황 등을 몽골에 알린 자이기도 했다는 점이⁶⁵⁾ 주목된다. 黑赤은 몽골인이었지만, 중국식 의례·격식과 관련한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어쨌든, 원종이 몽골황제에 의해 복위하는 과정에서 몽골 사신이 참관하는 가운데 백관들의 賀禮에는 국왕의 遙謝가 선행하였고, 이후 고려에는 다루 가치가 파견되어 상주하였음을 고려할 때, 국왕 遙賀는 원종 복위를 계기로 이후 고려에 정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고려시대 朝賀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려국왕의 遙賀에는 몽골에서 신년과 聖節에 지방 아문에서 황제에게 遙拜하는 의례, 즉 ‘拜賀行禮’를 근거로 한 의례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공민왕대, 고려가 明으로 사대의 대상을 변경하면서 명에 ‘本國朝賀儀註’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을 통해 볼 때 몽골 복속기 고려 측에서의 朝賀와 관련한 의례들은 몽골에 의해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몽골에는 제후나 외국 군주의 의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⁶⁶⁾ 이 연구에 따르면 이 ‘拜賀行禮’는 ‘至元 8년(1271)에 上奏하여 승인된 의식[至元八年奏準儀式]’에 의거하여 갖추어졌다고 하는데, 至元 8년은 앞서 이야기한 바 몽골에서 朝儀 정비가 완료되었던 해이다. 물론 고려에서 국왕 遙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이러한 의례가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至元 8년을 전후한 몽골에서의 의례 정비는 위에서 보다시피 당시 고려 내 정치 상황 및 고려-몽골 관계와 맞물리며 고려국왕의 遙賀가 정착되는 과정 및 그 형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집권 초기의 쿠빌라이 정권이 당면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진 至元 8년의 조의 정비는 고려와의 관계에서 「빈왕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형식적인 면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조의를 재현하는 한편으로 그것을 고려 내에서까지 동일하게 구현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이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64) 『高麗史』 권26, 원종 10년 11월 癸亥.

65) 『高麗史』 권28, 충렬왕 원년 7월, 10월 庚戌.

66) 최종석, 2010 앞의 논문 참조.

4. 맷음말

이상 고려에서 몽골에 파견한 정례적·의례적 사행의 한 사례이며, 관련한 상세한 사행기록이 남아 있는 1273년(원종 14) 賀冊封 使行 사례를 중심으로, 이 시기 고려 측 정례적·의례적 사행에 보이는 특징적 면모들과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검토해 보았다.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273년 하책봉 사행을 포함, 元宗代 對 몽골 정례적·의례적 사행에서는 고려 종실이 正使로서 사행단을 이끈 사례들이 다수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는 몽골과의 관계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며, 특히 원종대 사행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적 면모이다. 이는 전쟁 기간 중 몽골이 국왕 혹은 태자의 친조라는 수장 개인 간·가문 간 직접적 관계 형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는 가운데, 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고려 측에서 국왕의 친조를 피하면서도 몽골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몽골과의 관계 이전 정례적 사행을 이끄는 정사의 가문 배경 및 학식 등을 고려하여 정사의 격을 통해 사행의 격을 높임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의 중요도를 표시했던 고려의 사행 및 대외관계의 경험 속에서, 몽골이 관계 형성 및 유지에서 중시했던 수장 개인 간·가문 간 직접적 관계라는 요소를 나름 절충시킨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몽골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고려와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던 몽골과 다분히 동아시아적 관계의 맥락에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던 고려 사이에 온전히 동의, 정착되지 않은 이 시기 고려-몽골 관계의 한 단면과 그러한 관계를 바라보는 원종과 고려 측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충렬왕대 이후 고려왕실-몽골황실 간 통혼이 성사되고 국왕 친조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몽골적인 관계 형성 방식들이 고려-몽골 관계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활용되는 가운데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몽골의 세조 쿠빌라이는 1269년에서 1271년에 이르는 시기, 중국식 朝儀 정비를 단행했는데, 이는 집권 초기부터 쿠빌라이가 행했던 일련의 ‘漢法’ 수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漢地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국 황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여 한자 통치자로서 이질감 없이 스며들기 위한 외형적 도구로

서의 측면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의 정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1273년의 황태자 책봉은 그에 수반했던 조의 정비가 한지 통치를 위한 목적으로 더하여, 카이두 등 서방 종왕세력에 대한 통제와 권력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273년 使行의 배경이기도 했던 황태자 책봉과 그에 수반된 의례의 정비는 分封을 통해 권리와 권리가 분배되고 공유되는 유목사회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즉 ‘大元’, 예케 몽골 울루스(yeke Mongol ulus)의 군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기를 지향하는 가운데 제국의 최고권을 안정적으로 유지·승계하고자 했던 쿠빌라이가 권력의 집중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중국식 제도들을 선택적으로 변형하여 운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쿠빌라이 집권 초기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비된 몽골의 朝儀는 고려 측 사행단에 대한 의례, 禮數에도 반영되었고, 이는 1273년 하책봉 사행에 서장관으로 수행했던 이승휴가 남긴 사행기록인 「빈왕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에서 의례적 사행단을 몽골에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양국 간 講和가 맺어진 1260년부터이지만, 하정사·하성절사와 같은 정례적 사행이 시작된 것은 1263년 말부터이며, 사행단의 의례가 중국식으로 정비되어 적용된 것은 1271년부터였다. 또 그러한 중국식 조의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한 의례적 공간으로서의 大都城은 1273년에 그 正殿이 완공되었다. 이렇게 고려-몽골 관계 형성 초기인 원종대, 이 관계를 매개했던 사행이 동아시아의 전통적 사행 양상을 계승하여 정례적·의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형식적·의례적 측면이 처음부터 중국식 의례를 온전하게 재현하였던 것이 아니라 정비되어가는 과정을 거쳤음은 이 시기 원종 및 고려 신료들이 몽골을 ‘華’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당시 몽골의 중국식 조의 정비는 「빈왕록」에 묘사된 것과 같은 전통적 사행의 격식이 갖추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고려국왕의 황제에 대한 遙賀가 시행되는 데에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즉, 이때 정비된 의례들은 고려 내에서까지 동일하게 구현됨으로써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이전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동아시아의 사행 전통을 상당부분 계승하며 이루어졌던 정례적·의례적

사행 외에도 고려-몽골 간에는 실무적인 사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실무적 사행은 단지 빈도의 문제를 넘어 그 양상 면에서도 몽골의 사행 양상을 반영하면서 정례적·의례적 사행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고려-몽골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중이 높아진 실무적 사행의 양상들은 정례적·의례적 사행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쿠빌라이 집권 초기 행해졌던 조의 정비는 단지 의례의 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치 조직 정비까지 아우르는 것이었던 만큼, 그것이 고려와의 관계에서 미친 여파는 의례 적용상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양상을 넘어 이후 1275년(충렬왕 1) 관제 개편 요구에까지 도⁶⁷⁾ 이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주제어 : 고려-몽골 관계, 의례적·정례적 사행, 사행, 고려 종실 정사(正使), 중국식 조의(朝儀)

투고일(2015. 1. 31), 심사시작일(2015. 2. 4), 심사완료일(2015. 3. 2)

67) 『高麗史』 권28, 충렬왕 원년 10월 庚戌.

〈Abstract〉

A Study on the Patterns and the Backgrounds of Goryeo's
Routine and Ceremonial Envoy Trips to the Mongol empire
during the Reign of King Wonjong(元宗)

– With a focus on the case of Hachaekbong(賀冊封) envoy trip
of Goryeo in 1273 –

Lee Myungmi *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patterns of Goryeo's routine and ceremonial envoy trips during the reign of King Wonjong(元宗) in the early days of Goryeo-Mongol relations and review the internal and external backgrounds of those patterns, thus shedding light on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Goryeo-Mongolia relations.

The first phenomenon related to envoy selection in Goryeo's relationships with 솔 Mongol empire was the leadership of Goryeo's royal family members in envoy trips(宗室 正使), and the phenomenon became prominent during the rule of King Wonjong. Goryeo had resistance against the ways that the Mongols formed and maintained relations with other political units through the direct relations among the individual heads and families and thus took an eclectic approach by putting royal family members in its routine national envoy trips and thus heightening the class of its envoy trips based on its experiences. That pattern showed an aspect of Goryeo-Mongol relations during the reign of King Wonjong when there was no enough consensus on their relations between the two parties. It gradually declined since the reign of King Chungryeol(忠烈王) when such Mongolian relation elements as royal intermarriage and king's visiting the Mongol court himself emerged in the front line of Goryeo-Mongol relations.

Mongolia arranged the Chinese court ceremonies(朝儀) in 1269~1271 in the same context as the introduction of Hanbeop(漢法) for the rule of Hanji(漢地) by Kublai Khan when he ascended to the throne. Furthermore, the installation of the Crown Prince

* Researcher, Institutes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273 as an extension of the arrangement of the Chinese court ceremonies showed that the arrangement of the Chinese court ceremonies reflected Kublai Khan's sense of purpose to build a more centralized system of state in his relations with the powers of Western khans including Kaidu those days. The Mongol empire's "Chinese royal court ceremonies" arranged in the political situations during the early days of Kublai Khan's rule were reflected in the formalities of Goryeo's envoy trip parties and created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King Wonjong and his subjects to perceive the Mongol empire as "Hwa(華)". The ceremonies arranged at that time were realized the same both in Mongolia and Goryeo and became a background of kings' Yoha(遙賀) for emperors, thus showing differences in their scope of application from their counterparts of the previous times.

Key Words : the Goryeo-Mongol relation, routine and ceremonial envoy trips, envoy trips, the leadership of Goryeo's royal family members in envoy trips(宗室 正使), the Chinese court ceremonies(朝儀)